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52호 2020. 8. 10(월)

조 례

-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목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2
-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14
-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19
- 목포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21
-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26
-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31
- 목포시 관광홍보 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 33
-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35
-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37
-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42
-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46
-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48
-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52
-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58

규 칙

-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목포시 시민의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 62
-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79

공 고

- 2021년도 목포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81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공보과 ☎ 061-270-8539

제360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어려운한자어 정비를 위한 목포시 포상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8월 1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87 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목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조례의 상위법 인용조문과 용어 등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현행법령 조문을 적용하고 한글 어문규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포시 포상조례」의 개정) 「목포시 포상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8조 중 “양양”을 각각 “진작”으로 한다.

제3조(「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감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를 “**감염병에 걸려**”로 한다.

제4조(「목포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6시까지”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까지**”로 한다.

제5조(「목포시 중소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중소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양양”을 “**진작**”으로 한다.

제6조(「목포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계리”를 “**처리**”로 한다.

제7조(「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1항 중 “폭원”을 “**폭**”으로 한다.

제8조(「목포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제9조(「목포시 정비사업 구역 빈집 관리 조례」의 개정) 「목포시 정비사업 구역 빈집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제10조(「목포시관리 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관리 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입방미터”를 “**세제곱미터**”로 하고, 제4조 중 “통리”를 “**총괄**”로 한다.

제11조(「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개정)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여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목포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개정) 목포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계리”를 “**처리**”로 하고, 제17조 제목 “계리 상황의 보고”를 “**처리 상황의 보고**”로 한다.

제13조(「목포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목포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사력”을 “자갈”로 한다.

제14조(「목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의 개정) 「목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계리”를 “처리”로 하고, 제20조 제목 “계리 상황의 보고”를 “처리 상황의 보고”로 하며, 같은 조 조문 중 “계리”를 “처리”로 한다.

제15조(「목포시 가로수·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목포시 가로수·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및 같은 조 단서 부분의 “폭원”을 “너비”로 하고, 제12조제1항제1호 중 “수피”를 “나무껍질”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2조(「목포시 포상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 2. (생략)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u>양양</u> 에 숭선수범한 경우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u>진작</u> 에 숭선수범한 경우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③ (생략) 1. (생략) 2. 각종 지방행사에 초청 사기 <u>양양</u>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각종 지방행사에 초청 사기 <u>진작</u>

제3조(「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병가) ① (생략) 1. (생략) 2. <u>감염병의 이환</u> 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때,고 조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의 지급수준 또는 수임변호사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1조(병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감염병에 걸린</u> 그 공무원의 ----- ----- ----- ----- ----- -----.

제4조(「목포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②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u>하오</u> 7시부터 다음날 <u>상오</u>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②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u>오후</u> 7시부터 다음날 <u>오전</u>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목포시 중소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1조(모범근로자 사기진작) ① (생략) 1. (생략) 2. 기타 근로자의 사기 <u>양양</u>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모범근로자 사기진작)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기타 근로자의 사기 <u>진작</u>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목포시 중소기업지원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3조 (기금의 위탁관리) ⑤ 기금취급수탁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u>계리</u> 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의 관리 운용에 따른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하며 필요시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u>계리</u>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위탁관리) ⑤ 기금취급수탁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u>처리</u> 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의 관리 운용에 따른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하며 필요시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u>처리</u>할 수 있다.

제7조(「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7조의4(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국도, 지방도, 시도 등 2차선 또는 <u>폭원</u> 6미터 이상의 포장도로)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제17조의4(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국도, 지방도, 시도 등 2차선 또는 <u>폭</u> 6미터 이상의 포장도로)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제8조(「목포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조 (정의) 1. ~ 5. (생략) 6. “제설·제빙작업”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u>미연에</u>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2조 (정의) 1. ~ 5. (현행과 같음) 6. “제설·제빙작업”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u>미리</u>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9조(「목포시 정비사업 구역 빈집 관리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정비사업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빈집의 범죄 및 방화 등 사고발생을 <u>미연에</u> 방지하고,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인한 악취, 해충유입 등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정비사업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빈집의 범죄 및 방화 등 사고발생을 <u>미리</u> 방지하고,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인한 악취, 해충유입 등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목포시관리 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조 (시관리 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관리 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 <u>입방미터</u> 미만의 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제4조 (심의회의 운영)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u>통리</u> 한다.	제2조 (시관리 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관리 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 <u>세제곱미터</u> 미만의 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제4조 (심의회의 운영)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u>총괄</u> 한다.

제11조(「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의 <u>여타</u> 위원회 운영의 관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의 <u>그 밖의</u> 위원회 운영의 관례에 따른다.

제12조(「목포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1조 (출자) ① (생략)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u>계리</u> 한다. 제17조 (<u>계리</u>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 사업의 <u>계리</u>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출자) ① (현행과 같음)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u>처리</u> 한다. 제17조 (<u>처리</u>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 사업의 <u>처리</u>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목포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생략) ② 토석, <u>사력</u>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토석, <u>자갈</u>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목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2조 (출자) ②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u>계리</u>한다. 제20조 (<u>계리</u>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u>계리</u>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출자) ②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u>처리</u>한다. 제20조 (<u>처리</u>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u>처리</u>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목포시 가로수·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7조 (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호가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제7조 (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호가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에는 보도 폭원 등 여건에 따라 식재 한다.

2.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식재할 경우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m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단, 보도 폭원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바뀌심기 및 메워심기)

① 바뀌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고사 가로수
2.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1. 보도에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에는 보도 너비 등 여건에 따라 식재 한다.

2. -----

----- 단, 보도 너비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바뀌심기 및 메워심기)

① 바뀌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고사 가로수
2.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제360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8월 1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88 호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목포시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제비용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자격)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목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한다. 다만, 의원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 이외의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목포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퇴직일 이후 2년이 지난 사람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3조(선임방법) ① 목포시의회는 (이하 “의회”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위원을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후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②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목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한다.

1. 의장과 협의를 통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의장이 추천하는 1명
 3. 기획복지위원회, 환경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각 1명
- ④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공모, 시민단체 추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의장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을 우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⑤ 의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른다.

⑥ 의장은 선임된 감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⑦ 선임된 감사위원이 결산검사기간(이하 "검사기간"이라 한다) 중 결원된 때는,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책임위원) ① 감사위원 중에서 책임위원을 두되, 책임위원은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의원이 된다.

② 책임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원활한 결산검사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책임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감사위원의 직무) ① 감사위원은 시장이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빙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산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일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요구와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감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감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④ 제3항의 감사의견서에는 법 제13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회의 결산승인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반영에 필요한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추정, 환수, 변상등과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에 관한 의견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⑤ 감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감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끝난다. 다만, 선임된 감사위원의 신분은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설명·교육 등) 시장은 위원에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1조 전단에 따른 설명·교육 등을 결산검사 개시 기일 전에 실시해야 한다.

제7조(본회의 등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 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감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없이 감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감사위원에게 해촉을 통지해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5조에 따른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② 의회는 감사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64조에 따른다.

1. 감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감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제9조(자료제공 및 협조) ① 시장은 감사위원의 결산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성실

하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의 자료제출요구 등에 시장의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은 경위와 사유를 의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있을 경우 의회는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실제비용) ① 시장은 감사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수당을 검사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실제비용보상은 검사기간이 끝난 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7조에 따라 출석에 필요한 여비는 「목포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밀엄수 등) 감사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해촉 이후에도 결산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60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8월 1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2. “공동전기요금”이란 급수용,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 복도, 계단, 관리실, 경비실, 지하공동구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 및 공동승강기 이용에 따른 부대비용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현행과 동일 2.“공동전기요금”이란 급수용,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 복도, 계단, 관리실, 경비실, 지하공동구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현행과 동일 2.“공동전기요금”이란 급수용,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 복도, 계단, 관리실, 경비실, 지하공동구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 <u>및 공동승강기 이용에 따른 부대비용</u>을 말한다.

제360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8월 1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90 호

목포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2.“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부담한 모든 채무를 말한다.

3.“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법률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목포시에 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법률지원의 필요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1.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1041조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는 자
2.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1030조제1항의 한정승인 또는 「민법」 제1019조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려는 자

제4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가 관할 법원으로부터 「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3항에 따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의 수리여부에 관한 결정을 고지받은 때까지의 제반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방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률지원이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관계 및 대리신청 사유			
법 률 지 원 요 청 내 역				
본인은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재산확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목포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 제출서류 :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 끝.				

[별지 제2호서식]

부 모 채 무 대 물 림 방 지 법 률 지 원 관 리 대 장

연	번	신청일		
지원대상자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신 청 인				
신 청 내 역				
지 원 내 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진 행 사 항 및 결 과				

제360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8월 1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91 호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립어린이집은 보육계획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산업단지 지역

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 공립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입주자들의 과반수가 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입주자들의 과반수가 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중 제7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명칭 및 소재지 현황

명 칭	소 재 지
목포YWCA어린이집	목포시 백년대로337번길 23
셋별어린이집	목포시 원산정로 9 (산정동)
시립옥암주공2차어린이집	목포시 남악1로52번길 53
예향어린이집	목포시 도룡길 51-1 예향어린이집 (석현동)
카리타스어린이집	목포시 고하대로 712 (산정동)
포미타운4단지 어린이집	목포시 용해지구로88번길 24 포미타운4단지 관리동
행복주택어린이집	목포시 연산백련로1번길 51 관리동어린이집
현대어린이집	목포시 상동로 33 현대아파트
휴먼시아 어린이집	목포시 당가두로38번길 11 106동 1층(옥암동, 옥암주공1단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공립어린이집은 <u>보육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검토·감안하여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공립어린이집은 <u>보육계획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u>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산업단지 지역 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위탁운영) ①~⑥	제8조(위탁운영) ①~⑥ (현행과 같음)

⑦ 시장은 수탁자 1인에게 시의 관할 구역에서 1개소의 어린이 집만을 위탁하여야 한다.

<삭 제>

[별표 1]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명칭 및 소재지 현황

명 칭	소 재 지
예향어린이집	목포시 도룡길 51-1(석현동)
YWCA어린이집	목포시 백년대로 337번길 23(상동)
까리따스어린이집	목포시 고하대로 712(산정동)
옥암주공2차 어린이집	목포시 남악1로 52번길 53(옥암동)
휴먼시아어린이집	목포시 당가두로 38번길 11(옥암동)
포미타운4단지어린이집	목포시 용해지구로88번길 24(용해동)

[별표 1]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명칭 및 소재지 현황

명 칭	소 재 지
목포YWCA어린이집	목포시 백년대로337번길 23
셋별어린이집	목포시 원산정로 9 (산정동)
시립옥암주공2차어린이집	목포시 남악1로52번길 53
예향어린이집	목포시 도룡길 51-1 예향어린이집 (석현동)
카리타스어린이집	목포시 고하대로 712 (산정동)
포미타운4단지어린이집	목포시 용해지구로88번길 24 포미타운4단지 관리동
행복주택어린이집	목포시 연산백련로1번길 51 관리동어린이집
현대어린이집	목포시 상동로 33 현대아파트
휴먼시아 어린이집	목포시 당가두로38번길 11 106동 1층(옥암동, 옥암주공1단지)

제360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8월 1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92 호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수련비용의 징수) 관련 별표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단위:원)

구 분	초등학생이하	중학생이하	고등학생	대 학 생 (24세이하청소년포함)	일반인	비 고
금 액	7,000	7,500	8,000	8,000	10,000	

※ 숙박비, 수련시설, 야영장, 냉·난방비 포함 금액임(1인 1일 기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1. 청소년 수련원 시설 사용료 (단위:원)							[별표1] 1. 청소년 수련원 시설 사용료 (단위:원)						
구 분	초등학 생이하	중학생 이하	고등 학생	대학생 (24세이 하청소년 포함)	일 반	비 고	구 분	초등학 생이하	중학생 이하	고등 학생	대학생 (24세이 하청소년 포함)	일 반	비 고
금액	4,000	4,500	5,000	5,000	6,000		금액	7,000	7,500	8,000	8,000	10,000	

제360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관광홍보 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8월 1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93 호

목포시 관광홍보 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관광자원 및 문화예술 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관광홍보달력의 제작·배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작 및 배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홍보달력(이하 “달력”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제3조(규격 및 종류) 달력은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구분하고, 벽걸이용과 탁상용 등을 따로 제작 할 수 있다.

제4조(게재 사항)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로고와 시정구호
2. 관광자원 사진 및 설명
3. 각종 축제 및 행사내용
4. 절기 등 전통 민속과 음력, 각종 축제 등 관광 홍보 관련 내용
5.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달력의 무료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및 언론사
2. 한국철도공사(기차역 포함) 및 한국관광공사
3. 한국관광협회 및 여행사협회 회원사
4.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
5. 시 관내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6. 시 산하 단체, 마을회관, 경로당 및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7. 시 관내 복지시설, 음식점·숙박업소,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
8.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시설·단체 및 관련 업체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홍보달력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60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8월 1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94 호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장애1급, 장애2급, 장애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탑승료 면제 등) ① (생 략)	제5조(탑승료 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탑승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②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장애1급, 장애2급, 장애3급의 경우는 보조자 1인 추가 감면)	2.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60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8월 1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95 호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목포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목포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하고,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제4항의 사항
2. 문화예술, 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견수렴) 시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목포시 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계획의 추진·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도시재생·도시경관 등을 말한다) 간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 시민 제안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업무 담당 국·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법」 제21조 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문화·예술·역사·도시계획·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용역·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도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문화도시센터 설치)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문화도시센터를 둘 수 있다.

제16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문화예술 관련 전문법인, 지역 문화예술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60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8월 1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96 호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목포시 관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발전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목포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과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포함한다.
2. “기술혁신”이란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농·축산물, 수산물, 해초류, 건어물, 지역 특산물 등을 주요품목으로 취급하는 기업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기술혁신**, 정보화사업, 신규개발 프랜차이즈화사업, 홍보 및 판로개척 사업, 브랜드개발사업,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경영안정,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지적재산권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혁신**, 시제품제작, 정보화지원, 인증지원 등 지적재산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기술혁신**, 자동차, 정보화 등 기업구조개선에 우수한 실적이 있는 업체

제11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기술혁신** 품질관리, 자원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추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u>목포시 관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u>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u>다. <신설></u> <u>2. <신설></u>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u>다.“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포함한다.</u> <u>2. “기술혁신”이란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u>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취급하는 기업 및 <추가>----- ----.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취급하는 기업 및 <u>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u> ----- ----.

제4조(육성 및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추진할 때 기술개발, 정보 화사업----- -.	제4조(육성 및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추진할 때 기술혁신, 정보 화사업----- -.
제5조(지적재산권 지원) 시장은 중 소기업 ----- 제공하고, <추 가>, 시제품 제작 ----- -.	제5조(지적재산권 지원) 시장은 중 소기업 ----- 제공하고, <u>기술 혁신</u>, 시제품 제작 ----- -.
제7조(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을 지원----- --.	제7조(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을 지원-----.
제10조(우수업체 및 기업인 시상)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신기술개발, 자동차 -----.	제10조(우수업체 및 기업인 시상) 현행과 같음 2. <u>기술혁신</u>, 자동차 -----.
제11조(모범근로자 사기진작)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추가> 품질관리, 공정개선 기술 개발, -----.	제11조(모범근로자 사기진작)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2. <u>기술혁신</u> 품질관리, ----- -----.

제360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8월 1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97 호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종이지역화폐의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연간 4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고, 전자지역화폐는 연간 할인 구매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법인 및 개별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할인 및 수수료) ① 시장은 화폐의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화폐 권면 금액의 100분의 6(설치석 명절 전후 시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u>다만, 화폐의 할인가매는 개인의 경우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개별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가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u> <u><신 설></u>	제7조(할인 및 수수료) ① ----- ----- ----- ----- ----- ---. <u><단서 삭제></u> <u>② 종이지역화폐의 할인가매는 개인의 경우 연간 4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고,전자지역화폐는 연간 할인 구매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법인 및 개별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가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u>

제360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8월 1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98 호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 해역”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항포구”란 배가 드나드는 바닷가 입구에 배가 안전하게 드나들도록 부두 따위를 만들어 놓은 곳을 말한다.
3. “해양쓰레기”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해안가, 항포구 및 연안해역에서 수집되거나 배출되는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다) 등 각종 폐기물과 폐사한 해양 생물을 말한다.

4. “해양환경지킴이”란 시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와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안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해양”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목포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처리
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연구
5.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지원
6.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7.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의식증진 및 시민참여 방안
8.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 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해양환경지킴이)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의 위촉·운영 및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운영
2.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시설 및 장비 등 구입·운영
3.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연구
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협력)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어촌계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60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8월 1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99 호

목 포 시 자 원 순 환 기 본 조 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절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절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폐기물의 수집·분리·선별·파쇄·압축·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2.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여야 한다.
3.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하여야 한다.
4.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집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시에는 제9조에 따른 자원순환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목포시 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목포시의회의 의원
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회의시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원순환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책 수립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등) 시장은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등)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60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8월 1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00 호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담금 한시적 경감특례)

- 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교통량감축 활동 등 기존 부담금 경감 항목을 유지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적 경감적용례) 제6조의2 개정규정은 2020년도 부담금 부과대상 기간
(2019. 8. 1 ~ 2020. 7. 31)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 (통근관리인 선임 등) ①부담금을 경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근관리인 선임 (해임·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통근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통근관리인은 일상 근무시간 중 100분의 25이상을 통근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통근관리인에 대한 기록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통근관리인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u>제6조의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담금 한시적 경감특례)</u> ① <u>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30을 경감한다.</u> ② <u>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교통량감축 활동 등 기존 부담금 경감 항목을 유지한다.</u> <삭 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목포시 시민의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8월 1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 1800 호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목포시 시민의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규칙의 상위법 인용조문과 용어 등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현행법령 조문을 적용하고 한글 어문규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포시 시민의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목포시 시민의상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통리”를 “**총괄**”로 한다.

제3조(「목포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 「목포시 지방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제4조(「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계리”를 “처리”로 한다.

제5조(「목포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계리”를 “처리”로 하고, 제3조제5항 중 “기장”을 “기록”으로 한다.

제6조(「목포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에 관한 규칙」의 개정) 「목포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양양”을 “진작”으로 한다.

제7조(「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한다.

제8조(「목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목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통리”를 “총괄”로 한다.

제9조(「목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의 개정) 「목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해득”을 “이해”로 하고, 같은조 제6항 중 “도말”을 “지워 없애거나”로 한다.

제31조, 제45조제1항 중 “계리”를 각각 “처리”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양등”을 “상승”으로 한다.

제11조, 제16조, 제40조, 제44조, 제45조, 제49조, 제5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7조 중 “기장”을 각각 “기록”으로 한다.

제10조(「목포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사업회계규칙」의 개정) 「목포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사업회계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해득”을 “이해”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도말”을 “지워 없애거나”로 한다.

제31조 중 “계리”를 “처리”로 한다.

제11조, 제16조제1항, 제40조 제목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44조, 제45호, 제49조, 제5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7조, 제117조 중 “기장”을 각각 “기록”으로 한다.

제11조(「목포시의회 회의규칙」의 개정)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호, 제80조제4호 중 “깍연”을 각각 “흡연”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2조(「목포시 시민의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심사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위원장은 회무를 <u>통리</u> 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조 (심사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회무를 <u>총괄</u> 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3조(「목포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 든 사고의 발생을 <u>미연에</u> 방지 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 든 사고의 발생을 <u>미리</u> 방지하 여야 한다.

제4조(「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0조 (위탁운영) ③ 수탁관리 운영자의 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회계는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 항에 따라 다른 사업에 관한 회	제10조 (위탁운영) ③ ----- ----- ----- --- 따라 다른 사업에 관한 회

계와 분리하여 계리 하여야 하며, 복지관이 받은 기부금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리 하여야 한다.

계와 분리하여 처리 하여야 하며, 복지관이 받은 기부금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제5조(「목포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조 (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필요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재원 또는 용도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u>계리</u> 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위탁관리) ① ~ ④ (생략) ⑤ 기금취급수탁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u>계리</u>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의 관리 운용에 따른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필요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재원 또는 용도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u>처리</u> 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위탁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금취급수탁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u>처리</u>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의 관리 운용에 따른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목포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에 관한 규칙」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6조(순환근무)	제26조(순환근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청소작업의 능률향상과 환경미화원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근무부서별로 순환배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수시로 순환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청소작업의 능률향상과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

-----.

제7조(「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3조 (공사의 시공) ① 조례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경미한 공사 라 함은 다음 각 호이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 략) 3. <u>내경</u> 300mm이하의 연장 3m 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수 4. ~ 5. (생 략)	제13조 (공사의 시공) ① 조례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경미한 공사 라 함은 다음 각 호이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u>안지름</u> 300mm이하의 연장 3m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수 4. ~ 5. (현행과 같음)

제8조(「목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 ③ (생 략)	제3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 ③ (생 략)

④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
다.

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제9조(「목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2조 (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비의 오기사항은 당해부분 을 붉은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 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u>해득</u>할 수 있 게 하여 두어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 나 <u>도말</u>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11조 (장부의 <u>기장</u>)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 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u>기장</u>하여 야 한다. 제16조 (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 위를 입증하며, <u>기장</u>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	제12조 (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비의 오기사항은 당해부분 을 붉은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 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u>이해</u>할 수 있 게 하여 두어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 거나 <u>지워 없애거나</u> 또는 개 서할 수 없 다. 제11조 (장부의 <u>기록</u>)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 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u>기록</u>하여 야 한다. 제16조 (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 위를 입증하며, <u>기록</u>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

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제31조 (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 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계리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 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계리 한다.

제40조 (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① (생 략)

② 지정 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장한다.

③ (생 략)

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에 기장한다.

제44조 (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 절차 및 기장)

① 지출 예산집행의 승인을 얻은

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제31조 (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 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기록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 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처리 한다.

제40조 (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정 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에 기록한다.

제44조 (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 절차 및 기록)

① 지출 예산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 승인란에 기장한다.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27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 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제45조 (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장)

① 재고계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수입한도액 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② (생략)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장 한다.

제49조 (교부자금의 조치)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 승인란에 기록한다.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27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 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5조 (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

① 재고처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수입한도액 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 한다.

제49조 (교부자금의 조치)

① ~ ④ (생 략)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① (생 략)

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 정리한다.

③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해 수령증을 징구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 정리한다.

제86조 (소요산정)

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안등이 확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2분기분 이상 1사업년도분까지 소요량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① (생 략)

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

③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해 수령증을 징구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

제86조 (소요산정)

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상승이 확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2분기분 이상 1사업년도분까지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
제87조 (입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의거 계약서 부분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장·관리하여야 한다.
제88조 (출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출고청구서(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장·관리하여야 한다.
제89조 (발생품의 관리)
① (생 략)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장·관리하여야 한다.
제97조 (재고의 수정)
① 재고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장 관리한다.

일시 구입할 수 있다.
제87조 (입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의거 계약서 부분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8조 (출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출고청구서(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9조 (발생품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7조 (재고의 수정)
① 재고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제10조(「목포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사업회계규칙」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1조 (장부의 <u>기장</u>)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u>기장</u>하여야 한다. 제12조 (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u>해득</u>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② ~ ⑤ (생략)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u>도말</u>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16조 (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u>기장</u>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제31조 (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u>계리</u>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	제11조 (장부의 <u>기록</u>)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u>기록</u>하여야 한다. 제12조 (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u>이해</u>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u>지워 없애거나</u>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16조 (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u>기록</u>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제31조 (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u>처리</u>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

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계리하여야 한다.

제40조 (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 ① (생략)
-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수입 일계표(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장한다.
- ③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 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장한다.

제44조 (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장)

- ① 지출예산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 승인란에 기장한다.
- ② 관리자 또는 기업출납원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처리하여야 한다.

제40조 (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

- ① (생략)
-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수입 일계표(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 ③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 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제44조 (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록)

- ① 지출예산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 승인란에 기록한다.
- ② 관리자 또는 기업출납원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
행위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 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
서(별지 제27호서식) 또는 준
공 검사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
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장
하여야 한다.

제45조 (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
출절차 및 기장)

- ① 재고 계리를 행하는 재고자
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구입
한도액 공제부의 사용승인란
에 구입예정 견적금액을 기입
하여 공제한다.
- ② (생략)
-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
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 자산구입 한도액 공제부
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
부를 기장한다.

제49조 (교부자금의 조치)

- ① ~ ④ (생략)
- ⑤ 관리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자금의 정산보고
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
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장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
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
서(별지 제27호서식) 또는 준
공 검사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
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
출절차 및 기록)

- ① 재고 처리를 행하는 재고자
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구입
한도액 공제부의 사용승인란
에 구입예정 견적금액을 기입
하여 공제한다.
- ② (현행과 같음)
-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
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 자산구입 한도액 공제부
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
부를 기록한다.

제49조 (교부자금의 조치)

- ① ~ ④ (생략)
- ⑤ 관리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자금의 정산보고
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
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절차)

① (생 략)

②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에 기장 정리한다.

③ 세입세출 외 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해 수령증을 받은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부에 기장·정리한다.

제87조 (입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의거 계약서 부분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장·관리하여야 한다.

제88조 (출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출고청구서(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절차)

① (생 략)

②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

③ 세입세출 외 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해 수령증을 받은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부에 기록·정리한다.

제87조 (입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의거 계약서 부분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8조 (출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출고청구서(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9조 (발생품의 관리)

① (생 략)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서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장·관리하여야 한다.

제97조 (재고의 수정)

① 재고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장 관리한다.

제117조 (미수금대장의 작성과 기록)

① 미수금의 관리담당자는 수입징수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징수결의서의 내용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기장한다.

관리하여야 한다.

제89조 (발생품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서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7조 (재고의 수정)

① 재고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제117조 (미수금대장의 작성과 기록)

① 미수금의 관리담당자는 수입징수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징수결의서의 내용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기록한다.

제11조(「목포시의회 회의규칙」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74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음식물의 섭취와 깍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
 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제80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 3. (생략)
 4. 음식물의 섭취나 깍연행위

1. ~ 3. (현행과 같음)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
 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제80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 3. (현행과 같음)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8월 1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1801호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③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품권 할인가매는 개인의 경우 종이지역화폐는 월간 70만원,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전자지역화폐는 월간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할인 구매 한도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 반기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할인가매 및 수수료) ① <생략> ② <생략> ③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품권 할인가매는 개인의 경우 월간 70만원,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반기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할인가매 및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품권 할인가매는 개인의 경우 <u>종이지역화폐는 월간 70만원,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전자지역화폐는 월간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할인가매 한도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u> 법인의 경우 <u>반기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u>

목포시 공고 제 2020-1242호

2021년도 목포시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목포시에서 시행하는 2021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10.

목 포 시 장

I 지원대상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로서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목포시 소재 단체
 -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 ※ 국·도 보조금으로 지원대상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어야 하고,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어야 함.

Ⅱ 지원 제외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 영리목적, 개인·친목단체
- 특정 정당, 선출직 후보 지지단체, 종교활동 내용 포함 단체
- 다른 기관,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예정인 경우

Ⅲ 지원 범위

- 보조금의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다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는 운영비 지원 가능.
 -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 해당부서별 보조사업 지원 예산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

Ⅳ 접 수

- 접수기간 : '20. 8. 10.(월) ~ '20. 8. 27.(목)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 ※ 신청기간 중 평일 근무시간 내 접수, 토·일요일은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 수 처 : 목포시청 보조사업별 추진 담당 부서
- 제출서류

- (별지서식)보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기타 참고자료

※ 제출서류는 본 고시공고문 붙임파일 내려받아서 작성·제출

V 심사 및 결과통보

- 심의·선정 : 목포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심의시기 : 2020년 9월 중
- 심의기준
 - 법령 및 조례근거,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사업의 파급효과,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 및 수행능력, 전년도 성과평가, 자부담율 등
- 결과통보 : 신청단체 개별통보(해당 실과)

VI 기 타

- 제출서류는 사업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평가서류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사업성격에 따른 교부조건이 있을 수 있음.
- 우리시에서 지원을 받은 후 사업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취소(철회)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실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 문 의 처 : 목포시청 기획예산과 (☎ 270 - 3483)